

의안번호	제 37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허창원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0년 3월 4일

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

(허창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3월 4일

발 의 자 : 허창원, 전원표, 송미애,

연철흙, 이옥규, 정상교

1. 제정 이유

-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충청북도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예와 서예교육에 관한 정의(안 제2조)
- 서예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- 서예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(안 제5조, 제6조)
- 서예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(안 제7조)
-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·단체의 지원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라. 입법예고 : 2020. 1. 29. ~ 2020. 2. 18.(20일간)

충청북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예의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서예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를 준용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도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서예교육의 지원) 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·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교양강좌,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·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도지사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(이하 “인력양성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강의료와 수당
2.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
3.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
4.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7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 도지사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
2.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
3.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·조사·연구·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
4.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·단체의 지원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서예문화를 육성·발전시키는 사업
2.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·육성·활용하는 사업
3.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
4.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

5.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법인·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서예"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,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.
2. "서예교육"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,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제6조(서예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·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,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·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